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25

발의연월일: 2021. 5. 14.

발 의 자:조승래・김민기・이규민

홍익표 • 이탄희 • 강병원

서영석 · 홍기원 · 강훈식

맹성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금과 보험, 여신 등을 포함한 금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와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현행법의 규율 체계에 있고 그 관장기관 역시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준하 는 분쟁조정절차를 둘 필요가 있는데도 우체국예금과 관련한 사항은 분쟁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소비자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체신관서의 거래 상대방(이하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라 한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1.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 2.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 하여야 할 사항
- 3. 그 밖에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제1항 단서 중 "제28조제13호에"를 "제28조제15호에"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지 않고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우체국예금 ·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51조를 제56조로 하고,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6까지를 각각 제51조 부터 제55조까지로 한다.

제51조(종전의 제48조의2)의 제목 중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체국보험"을 "우체국예금·보험"으로,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을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보험 관련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우체국보험분 쟁조정위원회"를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1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쟁조정위원회의"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험 관계"를 "예금·보험 관련"으로, "보험사업체"를 "예금·보험사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험 또는 보험"을 "예금·보험 또는 예금·보험"으로 하다.

제53조(종전의 제48조의4)제4호 중 "제48조의3제1항"을 "제52조제1항"으로, "해당하는 데"를 "해당함"으로 한다.

제5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우체국예금·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 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우체국예 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연 생 <u><신 설></u> | 제3조의3(소비자 보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 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체신관서의 거래 상대방(이하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라 한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2.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보 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 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그 밖에 우체국예금・보험소 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 |
| | 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금의 종 류별 이자율을 정하려면 금융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① |

만, 「한국은행법」 <u>제28조제13</u> <u>호에</u>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u>그러</u>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 략) <신 설>

제48조의2(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 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체국 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 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 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으로 <u>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u> 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1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u>분쟁조정위원회의</u>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제28조제15 |
|-----------------------------------|
| <u>ই</u> 에 |
| |
| |
| 원회와 협의하지 않고 이자율을 |
| <u>정할 수 있다</u>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제4장_ |
| 우체국예금 • 보험분쟁조정위원회 |
| ll51조(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 |
| <u>정위원회</u> 의 설치 및 구성) ① <u>우</u> |
| <u>체국예금·보험</u> 이해관계인 |
|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 |
| 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
| 등 우체국예금 • 보험 관련 분쟁 |
|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u>우</u> 체국예금 • |
| 보험분쟁조정위원회 |
| |
| ② |
| <u>15명</u> |
| |
| ③ 분쟁조정위원회 |
| |
| |

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위촉한다.

- 1. 보험 관계 기관・단체 또는 보험사업체에서 심사・분쟁조 정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 3. (생략)
- 4. 그 밖에 <u>보험 또는 보험</u> 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⑤ (생 략)

제48조의3 (생략)

- 제48조의4(위원의 해촉)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 囑)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u>제48조의3제1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데</u>에도 불구 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u>제48조의5</u> (생 략)

<u>제48조의6</u> (생 략) <신 설>

| 1. <u>예금·보험 관련</u> <u>예금·보험사업체</u>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52조 (현행 제48조의3과 같음) |
| <u>제53조</u> (위원의 해촉)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52조제1항</u> 해당함 |
| <u>제54조</u> (현행 제48조의5와 같음) |
| <u>제55조</u> (현행 제48조의6과 같음) <u>제5장 보칙</u> |

<u>제51조</u> (생 략) <u>제</u>

<u>제56조</u> (현행 제51조와 같음)